2025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2025.12.1.(월) 중앙환자안전센터>

□ 배경

○ 「환자안전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함(참고1)

- 우리 원은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 수행

□ 주요내용(참고2, 3)

○ (**보고대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 (**보고기한***) 2026년 2월 2일까지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 (**보고사항***)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전담인력 배치현황

* 위원 구성·변동에 관한 서류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서는 별도 자료 첨부없이 보고 및 수정 가능

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②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위원 명단)

2) ’25년 위원회 활동증빙서류

3) ’26년 위원회 연간운영계획

구분	필수 내용	비고
활동증빙서류	○ 정기 회의록 2건 이상('25년 개최 회의) - 회의안건 및 결과, 참석자 서명부 포함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야 함
연간운영계획	① 환자안전활동 월별계획 ② 내부직원 대상 교육계획 ③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 ④ 활동소요예산 내역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야 함

○ (**보고방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전담인력 / 환자안전위원회 > 정기보고

- 자세한 사항은 포털 상단의 알림마당 > '2025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공지사항 내 '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보고 방법' 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 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환자안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참고1 현황 정기보고 관련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①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서류 2. 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다음 연도부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 3. 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담인력) ① (생 략) ②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인력)** ① ~ ③ (생 략)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한

(이하 생략)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참고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23. 3. 29. 시행)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사항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3)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 '가' 3)에 해당하는 기관은 1)~3)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사항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단, 기존 산정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사항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나'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환자안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21. 5. 4. 시행)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사항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 「의료법」 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참고3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시 관련 질의응답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해당 내용 발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행정해석'에서 확인 가능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계획서와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함 -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함 * 요양기관 종별 및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요양기호 변경 시에도 해당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나요?	○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제11조, 제12조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번	질의	답변
3	신규개설기관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기관 산정기준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및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1-88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고시 제2020-330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고시 제2018-114호) 모두 충족해야 함 ○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1-88호)을 충족하여야 함 *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임
4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기준 충족 시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전담인력 현황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지체 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원에 신고된 전담인력은 심평원에 신고되어 있는 요양기관현황(인력 등)에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및 기존인력 중 미신고·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필수
6	전담인력 배치현황이 변경되어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배치현황 변경 시 지체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7	전담인력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나요?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전담인력 업무범위는 「환자안전법」 제12조제2항을 따르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연번	질의	답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전담인력(기존,신규) 교육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2호에 따른 위탁기관(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9	전담인력이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일부터 전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수증 제출일로부터는 전담인력 인정 가능) 예시) '25년12월31일까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교육 이수증 제출일 전까지 전담인력 불인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해당 내용 발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행정해석'에서 확인 가능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모든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중「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 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며,「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 「의료법」 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함 - 미제출 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 가능) ○ 신설 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

연번	질의	답변
		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 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경우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 중복 적용할 수 없음.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4	전담인력 및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전담인력 배치현황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현황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지체 없이 변경신고 하여야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신고 ○ 또한, 인증원에 신고 된 전담인력은 심평원에 신고 되어 있는 요양기관현황(인력 등)에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신규 및 기존인력 중 미 신고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필수
5	전담인력 배치현황이 변경되어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배치현황 변경 시 지체 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함
6	전담인력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는지?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업무만 시행하여야 함
7	전담인력(기존, 신규) 교육 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환자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름